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17
----------	------------

제출년월일 : 2000. 8.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 (2000. 1. 28. 법률 제6,216호) 및 교육위원 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 (2000. 2. 28. 대통령령 16,731호)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폐지근거

-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폐지령

조례안 : 덧붙임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구	신
<p><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998. 6. 3. 법률 제5,546호)</p> <p>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①~⑫ (생략) ⑬ <u>교육위원의 선출공고, 후보자 등록, 교·원단체 선거인 추천방법, 교육위원 선거인 명부의 작성 기타 교육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⑭ (생략)</p> <p>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⑥ (생략) ⑦ <u>교육감 선출일공고, 후보자 등록, 교·원단체선거인 추천방법, 교육감선거인명부의 작성 기타 교육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 (1998. 8. 1. 대통령령 제15,858호)</p> <p>제53조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 <u>선거사무종사자, 선거인,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0. 1. 28. 법률 제6,216호)</p> <p>제5조 _____ (삭제)</p> <p>제28조 _____ (삭제)</p> <p><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 폐지령 (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1호) <u>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u></p>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290-1229 / 전송(043)292-15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 이상기 의안담당 연승흠 담당자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 - 156

시행일자 2000. 08. 09.

(경유)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람	교육감	지시	
접수	일자 시간	2000. 8. 9.	분류 교육감
	번호	3615	결재 기획관리국장
처리과	기획관리과	공람	기획관리과장
담당자			의회담당
심사자		심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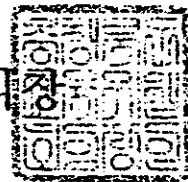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8. 8.)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17-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7-2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수당및실비보상 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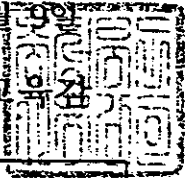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0 - 76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8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과장의 분장사무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 (안 제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의 개정(2000. 1. 28 법률 제6,216호) 및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이 폐지(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1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